

EU '활동농업인' 정의에 관한 최근 논의

김 태 연*

1. 서론

2025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2028~2034년 다년간재정계획(MFF)의 일부로 내놓은 차기 공동농업정책(CAP) 입법안—『CAP 규정』 초안(COM(2025) 560)과 『국가·지역 파트너십계획(NRPP) 규정』 초안(COM(2025) 565)—은 겉보기에는 예산 구조와 전달체계에 관한 기술적 개편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는 2013년 이래 EU 직접지불제의 수혜 자격을 규정해 온 핵심 개념, 즉 '활동농업인(active farmer)'의 법적 정의를 아예 폐지한다는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가 담겨 있다. 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 명예교수 앨런 매튜스(Alan Matthews)는 2026년 5월 자신의 블로그(CAP Reform)¹⁾에서 이 변화를 두고 '간소화(simplification)'를 표방하지만 오히려 더 관료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 2025년의 변화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누가 직접지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진짜 농업인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싸고 EU가 지난 십수 년간 벌여 온 시행착오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5년 개편안이 도입하려는 '주된 활동(principal activity)'이라는 기준은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 아니라, 2018년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다가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진짜 농업인(genuine farmer)' 개념의 핵심 요소가 7년 만에 다른 이름으로 되돌아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Regulation (EU) No 1307/2013, 2018년 집행위원회 「제안」(COM(2018) 392), Regulation (EU) 2021/2115,

*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tykim@dankook.ac.kr).

1) Matthews, Alan(<https://capreform.eu/the-commissions-proposal-to-replace-the-active-farmer-definition-appears-more-bureaucratic/>), "The Commission's proposal to replace the 'active farmer' definition appears more bureaucratic", 검색일: 2026. 9. 28.

그리고 2025년 개편안 원문을 직접 대조하여 활동농업인 개념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추적하고, 매튜스의 비판을 토대로 최근의 변화를 평가한 뒤, 한국 농업인 정의 논쟁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짚어본다.

2. 활동농업인(active farmer) 개념의 도입(2014년 개혁)

2.1. 배경

EU 직접지불제의 역사에서 결정적 전환점은 2003년 휘슬러(Fischler) 개혁이었다. 이 개혁으로 직접지불금이 당해년도 생산실적과 분리(decoupling)되어, 과거 일정 기준연도의 실적을 근거로 산정된 ‘지불권(payment entitlement)’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문제는 이 지불권이 매매·임대가 가능한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실제로는 영농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지불권만 보유한 채 소득을 얻는 사례—이른바 ‘문어발 지주’ 내지 영국에서 흔히 ‘슬리퍼 파머(slipper farmer)’라 불리는 현상—가 일부 회원국에서 문제로 지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공항, 골프장, 부동산 개발업체와 같이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에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정책적 정당성 논란을 낳았다. 매튜스(Matthews, 2012)에 따르면 이 문제는 유럽감사원이 단일직불제(Single Payment Scheme: SPS) 및 신규 회원국의 단일면적직불제(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 이행에 관한 감사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안이기도 했다. 유럽감사원은 여러 수혜자가 통상적 의미의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였으며, 이 지적이 결국 활동농업인 정의를 CAP 입법 의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2.2. 활동농업인 규정 도입(1307/2013)과 한계

2.2.1. 활동농업인 규정 도입

2013년 개혁을 통해 채택된 『직접지불규정』(Regulation (EU) No 1307/2013)은 제9조에서 처음으로 ‘활동농업인(active farmer)’이라는 법적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골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방목·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토지가 농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회원국이 정한 최소 활동조차 하지 않는 자에게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제1항). 둘째, 공항, 철도서비스, 상수도, 부동산서비스, 영구적 스포츠·레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EU 차원에서 공통으로 정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두었다(제2항). 다만 이들도 ① 직접지불금이 비농업 활동 총수입의 5% 이상에 해당하거나, ② 농업활동이 미미한 수준이 아니거나, ③ 주된 사업목적이 농업 활동임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활동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셋째, 회원국은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에 따라 이 리스트에 유사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가졌다(제3항). 넷째, 전년도 직접지불금 수령액이 5천 유로를 넘지 않는 소액 수혜자는 이러한 심사에서 자동으로 제외—즉 자동으로 활동농업인으로 간주—되었다(제4항). 이 요건은 『농촌개발 규정』(Regulation (EU) No 1305/2013)이 정한 일부 지원—자연제약지역 지불금, 농업환경·기후 조치, 동물복지 조치 등—에도 함께 적용되어, 활동농업인 개념은 제1축의 직접지불제를 넘어 제2축인 농촌개발 정책 일부까지 영향을 미쳤다.

2.2.2. 활동농업인 규정의 한계

이 방식의 특징은 '농업활동의 실질'을 직접 심사하기보다, 농업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업종'을 미리 열거하여 배제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업종 열거형 접근은 명단에 오른 업종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배제 기준을 제공했지만, 명단에 오르지 않은 업종에 속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은 걸러내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또한 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더라도 세 가지 예외 사유 중 하나만 입증하면 다시 활동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탈리아농업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실린 실증 분석(Pupo D'Andrea & Romeo Lironcurti, 2017)은 2014~2020년 기간 동안 활동농업인 요건이 회원국별로 매우 이질적으로 이행되었음을 보이면서,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직접지불금의 성격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지불금을 '진짜 농업인(genuine farmer)'에게만 한정하려는 입장과, 주된 활동과 무관하게 토지를 관리(land management)하는 자 누구에게나 지원하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두

입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2018년 집행위원회가 완전히 다른 접근—전면적인 업종 열거 대신 회원국 재량에 기반한 정성적 판정 방식—을 제안하는 배경이 되었다.

3. 진짜 농업인(genuine farmer) 개념의 도입 시도(2018년 개혁안)

3.1. 배경

2018년 6월 1일, 집행위원회는 2021~2027년 CAP를 위한 『CAP 전략계획규정』(이하 「제안」)(COM(2018) 392)을 발표하였다. 이 「제안」은 이른바 ‘신추진모델(new delivery model)’을 도입하여 정책 설계와 이행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회원국에 이양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였으며, 활동농업인 개념 역시 이러한 분권화 기조에 맞추어 전면 재설계되었다. 「제안」 전문(recital) 제9항은 “CAP의 성과를 한층 개선하기 위해, 소득지원은 진짜 농업인(genuine farmers)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EU 차원의 공통된 접근을 위해 ‘진짜 농업인’에 관한 기본 정의(definition)를 마련하되, 구체적으로 누가 진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각 회원국이 자국에서 마련하는 CAP 전략계획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3.2. 세부 정의와 특징

3.3.1. 정의

「제안」 제4조 제1항(d)는 ‘진짜 농업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진짜 농업인’이란, 농업활동이 전체 경제활동 가운데 미미한 부분만을 차지하거나 주된 사업활동(principal business activity)이 농업이 아닌 자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다만 이로 인해 다활동 농업인(pluri-active farmer)²⁾에 대한 지원이 배제

2) 다활동 농업인(Pluriactive farmer)는 토지와 자본을 활용해서 비농업적인 사업소득을 얻는 다원적 농업인(diversified farmer)과 농외취업을 통해서 비농업적 수입을 얻는 겸업 농업인(part-time farmer)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이다(유진채 외, 2005; 장동필·김태연, 2010 참조).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정의는 소득심사, 농장 노동투입, 법인의 설립목적 및 등록부 등재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어떤 농업인이 진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조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된 사업활동(principal business activity)’이라는 표현이다. 2013년 규정이 특정 업종을 열거하여 배제하는 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2018년 「제안」은 처음부터 ‘무엇이 그 사람의 주된 활동인가’라는 정성적·상대적 기준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적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2025년 개편안의 ‘주된 활동(principal activity)’ 개념과 문언상으로도 사실상 동일한 발상이다.

3.2.2. 특징

2018년 「제안」의 또 다른 특징은, 2013년 규정이 두었던 EU 차원의 의무적 네거티브 리스트(공항·철도·상수도·부동산·스포츠시설 운영자 열거)를 아예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회원국이 전략계획 안에서 소득심사·노동투입·법인목적·등록부 등재와 같은 기준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자국의 ‘진짜 농업인이 아닌 자’를 판별하도록 전권을 위임하였다. 이는 EU 차원의 공통 업종 리스트라는 획일적 장치를 걷어내고, 그 대신 결과 지향적인 최소 요건—‘농업활동이 미미하지 않을 것’, ‘주된 사업목적이 농업일 것’—만을 제시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법 조문을 단순화하면서도 실질적 판별 기준은 회원국의 자율적 조치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었다.

〈표 1〉 EU 활동농업인과 진짜 농업인의 정의 변천 상황 비교

구분	2013년 (Reg. 1307/2013 제 9조)	2018년 「제안」(COM(2018)392)	2021년 최종 (Reg. 2021/2115 제4조 5항)
명칭	활동농업인 (active farmer)	진짜 농업인 (genuine farmer)	활동농업인 (active farmer)
핵심 기준	업종 열거형 네거티브 리스트(공항·철도·상수도 등)	‘주된 사업활동’이 농업인지 여부 (정성적 기준)	최소 수준의 농업활동 종사 여부 (정성적 기준)
네거티브 리스트	EU 차원에서 의무 지정	폐지 - 회원국 전권 위임	선택적 도구 중 하나로 격하
판정 도구	업종 리스트+ 3가지 예외 입증 사유	소득심사·노동투입·법인목적· 등록부 등	소득심사·노동투입·법인목적· 등록부 등(좌동)

자료: 저자 작성.

3.3. 명칭 도입 실패와 기존 명칭의 부활

3.3.1. 농업이사회의 반대

매튜스에 따르면 ‘진짜 농업인’ 개념에 대해 회원국 장관을 구성으로 하는 농림수산이사회(AGRIFISH Council)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 정의가 요구하는 준수 여부 확인, 즉 개별 농업인이 실제로 ‘진짜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별하는 데 따르는 추가적인 행정부담 때문이었다. 즉, 회원국에 전권을 위임하여 자율성을 높이려 했던 시도가, 정작 회원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심사·판정 책임을 떠안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판정 권한의 분권화가 반드시 행정부담의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뒤에서 살펴볼 2025년 개편안에 대한 매튜스의 비판과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3.3.2. 유럽의회의 입장과 제안

반면 유럽의회는 오히려 활동 농업인에 관한 명시적 정의를 법안에 유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이 요구가 관철되어 최종 법률(Regulation (EU) 2021/2115, 2021년 12월 채택, 2023년부터 적용)에 반영되었다. 다만 의회가 요구했던 네거티브 리스트의 의무화까지는 관철되지 못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최종 타협안은 앞서 제시되었던 내용이 혼합되는 형태로 된다. 즉, 명칭은 2013년의 ‘활동농업인’으로 회귀하였지만, 실제 정의 방식은 2018년 「제안」에 나타난 ‘진짜 농업인’ 개념에 훨씬 가까운 회원국 재량형 구조를 취하게 된 것이다. 즉 제4조 제5항은 “최소 수준 이상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만 지원이 돌아가도록” 정의하되, 회원국이 소득심사·노동투입·법인목적·등록부 등재와 같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하나 이상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2013년의 핵심 장치였던 업종 열거형 네거티브 리스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지만, 이제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그 지위가 격하되었다. 여기에 2013년부터 있었던 소액수혜자(5천 유로 이하) 자동인정 조항과 다활동농업인에 대한 예외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3.4. 종합

정리하면, 2021년 최종 규정은 '용어'의 측면에서는 2013년의 활동 농업인 개념을 계승하였지만, '실계 철학'의 측면에서는 2018년 진짜 농업인 제안이 지향했던 회원국 재량형·정성적 판별 방식을 상당 부분 수용한 절충적 결과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2025년 개편안이 다시 한번 '주된 활동'이라는 정성적 기준을 전면에 내세우며 활동 농업인이라는 별도의 정의 자체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 전환이 아니라 2018년에 한 차례 좌절되었던 구상이 7년의 시차를 두고 다시 시도되는 것에 가깝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4. Post-2027 개혁안의 농업인 정의와 최근 논의

4.1. 활동농업인 정의의 폐지

2025년 7월 16일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NRPP 규정』 초안(COM(2025) 565)과 『CAP 규정』 초안(COM(2025) 560)에서, '활동농업인'이라는 용어와 그 법적 정의는 사실상 사라진다. 『NRPP 규정』 초안의 전문 제44항에 이 표현이 한 차례 남아 있을 뿐, 법률 본문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그 취지는 '농업인이 누구인가'라는 정의 자체에 흡수되어,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 곧바로 직접소득지원(DABIS)이나 기타 직불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단일한 구조로 재편된다. 『NRPP 규정』 초안 제4조 제3항(c)는 농업인을 ①주된 활동이 농업인 자연인·법인, 또는 ②주된 활동은 농업이 아니지만 회원국이 정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소규모 법인으로 정의한다.

4.2. '주된 활동(Principal activity)' 개념의 재도입

『NRPP 규정』에서 핵심 장치로 등장하는 '주된 활동(principal activity)'이라는 표현은, 앞서 살펴본 2018년 「제안」의 '진짜 농업인' 개념의 '주된 사업활동(principal business activity)'과 사실상 같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2018년 「제안」이 활동 농업인과 별개로 ‘진짜 농업인’이라는 독립된 개념을 신설하려 했던 것과 달리, 2025년 개편안은 아예 ‘농업인’ 정의 자체를 이 기준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활동 농업인이라는 매개 개념 자체를 소거해 버렸다. 둘째, 2018년 「제안」에서 소득심사·노동투입 등 판별 기준이 법률 본문(비록 회원국 재량이었지만)에 명시되었던 것과 달리, 2025년 개편안에서는 이 기준들이 전문(recital 45)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약한 해설적 지위로 밀려났다.

『CAP 규정』 초안 제6조 제5항 역시 “지원은 농업활동을 영위하며 식량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하며, 주된 활동이 농업이 아니더라도 최소 수준 이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소규모 농업인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여, 『NRPP 규정』의 농업인 정의와 부분적으로 중복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3. WTO 규정과의 정합성 고려

『NRPP 규정』 초안 전문 제44항은 “CAP 지원은 WTO 규범에 부합하게 정의된 활동농업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활동농업인이라는 용어가 법 본문에서는 사라지면서도, 그 개념이 수행해 온 기능—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가 WTO 농업협정상 허용보조(Green Box)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EU의 디커플링된 단일직불제가 WTO 허용보조 기준을 온전히 충족하는지는 오래전부터 학계의 논쟁거리였다. Swinbank & Tranter(2005)는 2003년 개혁으로 도입된 단일직불제(SPS)가 과거 기준연도 실적에 지급액을 연동시킨다는 점에서 허용보조가 요구하는 ‘생산과의 완전한 단절’을 온전히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수혜자가 실제 ‘농업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활동 농업인 요건은 EU의 디커플링 정책이 갖는 이러한 법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장치로서도 기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4.4. 개혁안에 대한 비판점

4.4.1. 재시도에 대한 우려

매튜스는 2018년 「제안」에서 '진짜 농업인' 개념 도입이 이사회·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입법 사례를 상기시키며, 집행위원회가 2025년에 이르러 유사한 구상—별도 정의를 없애고 정성적 기준으로 농업인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을 다시 시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2018년 당시 이사회가 반대했던 핵심 이유, 즉 회원국에 새로운 판정·심사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가 이번 개편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4.4.2. 이중기준 체계에 대한 우려

매튜스는 회원국이 종전과 유사한 기준(소득 비중, 노동투입 등)을 계속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개편이 실제 수혜 대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회원국이 이제는 '주된 활동'과 '최소 활동'이라는 별개의 두 기준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사결정 과정에 복잡성을 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NRPP 규정」과 CAP 규정 두 개 법률에 조문이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과 불일치—앞서 살펴본 제6조 제5항과 농업인 정의 사이의 미묘한 적용범위 차이 등—도 비판의 대상이다.

4.4.3. 영향 평가의 미시행

마지막으로 매튜스는 이번 개편안에 구체적인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고자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한다. 법률 조문을 짧게 줄이는 이른바 '입법 간소화' 시도가, 회원국에 어떤 조치가 적법하고 어떤 조치가 그렇지 않은지를 안내해 주던 상세 규정의 명확성을 오히려 희생시켰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결론이다.

5. 맺음말

5.1.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시사점

EU가 지난 십수 년간 밟아 온 경로—2013년 업종 열거형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회원국 재량형 ‘진짜 농업인’ 시도와 그 좌절, 2021년의 절충적 타협, 그리고 2025년의 재통합 시도—는,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단일한 농업인 정의란 애초에 존재하기 어려우며, 정의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한 번의 입법으로 종결되기보다 지속적인 시행착오와 재조정 of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2018년 ‘진짜 농업인’ 구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회원국 스스로(이사회)의 반대로 좌절되었다는 사실은, 형식적 절대기준을 실질적·정성적 기준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새로운 행정부담이라는 역풍에 부딪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강화—이른바 ‘가짜 농업인’ 대응—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가 『농지법 시행령』상의 절대적·형식적 기준을 소득 비중이나 노동투입 비중과 같은 상대적 기준으로 보완하고자 한다면, EU의 경험은 그러한 전환이 간소화(simplification)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심사 인프라와 행정 역량을 요구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EU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름(활동 농업인·진짜 농업인)을 오가면서도 결국 본질적으로 유사한 판별 기준(소득심사·노동투입·등록부 등재)으로 수렴해 온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명칭이나 법적 개념의 신설 여부보다 실제 판별 기준의 설계—무엇을 ‘주된’ 또는 ‘최소’ 활동으로 볼 것인가—에 논의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는 시사점도 준다.

5.2. 맺음말

2025년 EU의 ‘활동 농업인’ 정의 폐지 시도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2003년 디커플링 개혁 이후 EU가 ‘누구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 온 오랜 시행착오의 연장선에 있다.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정성적 기준으로, 다시 회원국 재량형 정의에서 단일화된 농업인 정의로 이어지는 이 궤적은, 목표 설정(targeting)이라는 정책 목

표와 행정적 간소화(simplification)라는 또 다른 목표가 서로 긴장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매튜스의 비판이 지적하듯, 이번 개편이 표방하는 간소화가 실제로는 새로운 복잡성을 낳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제도 개편에 나서는 모든 국가에 신중한 설계와 충분한 영향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 참고문헌

〈국내문헌〉

- 유진채·신재완·김태연(2005), “조건불리지역의 농가유형 구분과 다활동성에 관한 연구: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마을 사례 중심”, 농업경영·정책연구, 32(3): 447-474, 한국농업정책학회·한국축산경영학회.
- 장동필·김태연(2010), “아산시 농촌마을에서의 농가복합활동 차이 비교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7(2): 366-385, 한국농식품정책학회·한국축산경영학회.

〈국외문헌〉

- European Commission(2018.6.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COM(2018) 392 final, 2018/0216(COD).
- _____ (2025.7.1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on support to the Common Agriculture Policy for the period from 2028 to 2034, COM(2025) 560 final, 2025/0241(COD).
- _____ (2025.7.1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European Fund for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agriculture and rural, fisheries and maritime, prosperity and security for the period 2028-2034, COM(2025) 565 final.
- Pupo D'Andrea, M. R. & S. Romeo Lironcurti(2017), “Is the question of the ‘active farmer’ a false problem?”, Bio-based and Applied Economics, 6(3).
- Swinbank, A. & R. Tranter(2005), “Decoupling EU Farm Support: Does the New Single Payment Scheme Fit within the Green Box?”, The Estey Centr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Trade Policy, 6(1): 47-61.

〈법령〉

- Regulation (EU) No 1307/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rules for direct payments to farmers under support schem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OJ L 347, 20. 12. 2013, p. 608(<https://eur-lex.europa.eu/eli/reg/2013/1307/oj/eng>), 검색일: 2026.9.28.

Regulation (EU) No 130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OJ L 347, 20. 12. 2013, p. 487(<https://eur-lex.europa.eu/eli/reg/2013/1305/oj/eng>), 검색일: 2026.9.28.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Regulation), OJ L 435, 6. 12. 2021, p. 1(<https://eur-lex.europa.eu/eli/reg/2021/2115/oj/eng>), 검색일: 2026.9.28.

〈온라인자료〉

Matthews, Alan(<https://capreform.eu/understanding-the-active-farmer-debate/>), "Understanding the 'active farmer' debate", 검색일: 2026.9.28.

Matthews, Alan(<https://capreform.eu/the-commissions-proposal-to-replace-the-active-farmer-definition-appears-more-bureaucratic/>), "The Commission's proposal to replace the 'active farmer' definition appears more bureaucratic", 검색일: 2026.9.28.

